2024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

2023. 12.



목 최

I . 사업	개요	1
Ⅱ. 주요	내용	2
Ⅲ. 사업	추진체계	5
IV. 평가	및 환류	9
V. 주요	변경사항	10
◈ 사업신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11

00 /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

Ⅰ 사업 개요

□ 목 적

O 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
□ 사업내용

O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(유기)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

□ 지원자격 및 요건

- O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(이하 "직불금"이라 한다)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
 - *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'가축사육업'이어야 함
- 동일 농장이나,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(가족 등)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O 지원내용: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
- O '24년 예산: 1,585백만원(국비 100%, 직불금 960백만원, 교육·컨설팅 625)

□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('24.3.2~3.31.)
- 대상자 선정: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(~'24.4.12.)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축산환경자원과	과 장 서준한 서기관 김 성 주무관 이주희	044-201-2351 044-201-2352 044-201-2354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직불관리과	과 장 전익성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	054-429-7800 054-429-7807 054-429-7809

표 주요 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○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("유기축산물"과 같음. 이하 같음) 인증을 받은 자
-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(이하 "직불금" 이라 한다)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
 - *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'가축사육업'이어야 한다.
- 동일 농장이나,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

3.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

- 지원기준
 -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 (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)
- 지급기간 산출방법
-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
-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-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 - * 다만,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·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경영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자금재원: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(공익증진기금)
- 지원형태 : 국고 보조 100%
- 지급대상 기간 : '23. 11. 1. ~ '24. 10. 31.
-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(정산서, 판매내역서 등)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* 다만,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(유기인증)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
-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농촌진흥청,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함
 - * 종축, 종란(계란, 오리알, 메추리알)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- 지급단가
- 한 우: 170,000원/마리
 - *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% 감액 지급
- 젖 소(우유) : 50원/L(우유 1ℓ는 1.03kg임)
- 산 양(산양유) : 4,584원/마리(산양유 34원/리터)
- 돼 지: 16.000원/마리
- 육 계: 200원/마리
 - *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% 증액 지급
 - 산란계(계란) : 10원/개
 - * 다만.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.
 - ·산식 : {(인증 마리수 × 20개 × 단가 × 개월 수) (입증량 × 단가)} × 0.5
 - 오 리 : 400원/마리
 - 오리알 : 20원/개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: 3천만원
- 아래 지정 농장(①~③) 중 하나 이상의 지정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, 직불금 지원액의 20%를 가산하여 지급하되,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('23.11.1.~'24.10.31.)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%를 가산 함
 - ①「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(지정서 발급)
 - ②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(지정서 발급)
 - ③「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(지정서 발급)
 - * 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
 - **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
- 지급 방법
- '23. 11. 1.부터 '24. 10. 31.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'24. 12월 지급
 - * 다만,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(1개월 미만은 제외)
-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상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
 - * 직불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(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시까지)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
 - ** 단,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,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-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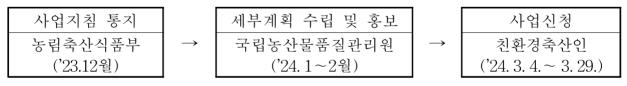
Ⅲ / 사업추진체계

1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·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2. 사업신청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경영체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('24.1~2월)
-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 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('24. 3. 4. ~ 3. 29.)
- 신청서 양식: [별지 제1호서식]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* *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-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(사무소장)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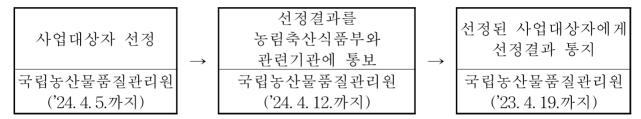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신청자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

3. 사업자 선정단계

가. 사업대상자 선정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○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- ①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
- ②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
- ③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
- ④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농가 (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)
- ⑤ '④'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
- ⑥ '④'와 '⑤'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큰 농가
-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·관리
-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
-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

- 통지 양식: [별지 제2호서식]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*
 - *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(사업대기자 포함)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,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....
 - * 친환경축산직불 교육·홍보 사업 활용 가능

나. 신청내용 변경

- 변경대상
- (사업대상자 변경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(축사)의 매도·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 - * 사업대상 축사(농장)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경영체에 지급 함
- (인증기관)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 - 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

- (농지현황)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(지번)변경, 인증 품목 축소, 필지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
- 변경신청 기간 :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신청방법 : [별지 제3호서식]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
 -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: 변경된 인증서 사본,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 등 변경 건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4. 이행점검 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·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직불금 지급대 상자가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 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
- 이행점검 요청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→ 농관원 지원·사무소 및 인증기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은 직불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·사무소 및 인증기관(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)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 ('24.4.26.까지)
- 이행점검 기간 : '23.11.1. ~ '24.10.31.(1년간)
- 기관별 수행사항
- (인증기관) 「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」 별표 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
- (농관원 지원·사무소) 인증번호·인증농장·축종 등 일치 여부 등 인증 정보 유효성 검증, 농업경영체등록·변경 여부, 직불금 중복신청 여부 등 점검
- 점검결과 통보(농관원 지원·사무소 및 인증기관 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- 농관원 지원·사무소 및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결과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본원)에 통보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('24.11.11.까지)

5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는 거래내역서(정산서, 세금계산 서 등)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('24.11.1.~11.8.)
- 신청서 양식 : [별지 제4호서식]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
 -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직불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·통보하고, 해당 지원·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
 - ** 직불금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('24.11.15.까지)
- 인증취소, 인증기간만료, 신청포기,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, 자격요건 및 생산· 판매 실적 확인('24.11.15.~11.29.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·판매 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('24.11.29.까지)

나.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('24.12.9.까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금 지급('24.12.13.까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·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지급

6.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(제재)

-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, 직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.
-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('24.10.31.) 후에도 직불금 지급 시까지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하고,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신청 포기 시, 다음 연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

7. 이행점검 등 전(全)단계 협조사항

○ 농림축산검역본부,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Ⅳ 평가 및 환류

1. 실적보고서 제출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 추진 완료 후 농식품부에 실적 보고('25.1월)

V 주요 변경사항

사업명	현행(2023)	변경(2024)	변경사유
사업 병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지불제 사업	 <4. 이행점검 단계(8~9p)> ○ 이행점검 요청(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→ 농관원 지원 · 사무소 및 인증기관)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은 직불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(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)에 통보하여 이행 점검을 요청('23. 4. 28.까지) *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○ 이행점검 기간 : '22. 11. 1. ~ '23. 10. 31. (1년간) ○ 점검내용 : 인증번호, 인증 농장・축종 등 일치여부, 인증기준 준수 여부(현장조사), 농업경영체등록・변경여부, 중복신청 여부 등 인증기관에서는 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」(농관원 고시) 별표 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○ 점검결과 통보(농관원 지원·사무소 및 인증기관 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	 <4. 이행점검 단계(8~9p)> ○ 이행점검 요청(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→ 농관원 지원 · 사무소 및 인증기관)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은 직불금 시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(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)에 통보하여 이행 점검을 요청('24. 4. 26.까지) ◇삭 제> ○ 이행점검 기간 : '23. 11. 1. ~ '24. 10. 31. (1년간) ○ 기관별 수행사항 - (인증기관) 「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」별표 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생산 과정조사 - (농관원 지원·사무소) 인증 번호·인증농장·축종 등 일치 여부 등 인증 정보 유효성 검증, 농업경영체등록·변경 여부, 직불금 중복신청 여부 등 점검 ○ 점검결과 통보(농관원 지원 · 사무소 및 인증기관 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- 농관원 지원·사무소 및 인증 	○ 기관별 수행사항을 명확히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			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					
	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			
신 청 인	X A				자택?						
	주소				휴대?	인와 우편 주소					
	누ㅈ니어										
	농장명				사업.	사업자등록번호					
	농장전회					성명					
농장현황	팩스번호	-			대						
	설립일	년 월	늴 일		표 자	전화번호	2				
	구성원수		 명			전자우편	면 주소				
친환경인 최초 인증	일		<u>안전관리</u> 인 최초 인						회		
(인증번호	<u>5)</u>					1					
ᅔᄌ	인증	농	장 소	재 지		사육	인증	예상생산량	예상금액		
축 종	종류	시・군・구	읍•면	리・동	지번	두수	두수	(단위)	(천원)		
합 계											
입금계좌	(은행명))	(예금주)		(계좌박	번호)				
「농업・농	:촌 공익기	기능 증진 직접		운영에	관한 법	률 시행령	」 제30	조 및 같은	법 시행규칙		
		위와 같이 친						,			
		이 본인의 개역	인정보를 (아래와 깉	이 처리하	하는 것에	동의 (동	의하는 경우	[]에 "√"		
표시)합니다		지급과 관련히	되어 사기	케이저버	이 스치 .	A S A I	두 이 하나 나	- I			
		지급과 관련하						- Г.			
		및 제3자 제공・		. — -				하며(등록정보름	변결하는 결우		
에도 이하	같습니다),	농림축산식품부,	국립농산물								
		기용할 수 있습니 및 제3자 제공 •		동의는 거	부 할 수 있	습니다. 다민	<u>난</u> , 동의하	지 않을 경우 공	익직접지 불 금의		
지급, 「농여	거업경영체	육성 및 지원에 -	관한 법률」	제4조에 띠	른 융자・5	년조금의 지 원					
								년 월] 일		
					신	l청인		()	서명 또는 날인)		
<u>국립농산</u>	물품질	관리원장 구	<u> </u> 나하								
		리인증농장 인증		011 =1 0	-1.11				수수료		
첨부서류		투산식품부 소관 천 데3항에 따른 인종			기식품 등의	관리 • 시원(게 관안 몁	뉼 시앵규직」	없음		
				처 리	절 차				1		
신청서 작	성 -	→ 점	<u></u> 수	→		E 및 확인	-3	지급대상	자 선정 통보		
신청인						· 					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

	성	명					Į	뱅 년 월	일		
지급대상자 인적사항	농업경 등 록 1						7	자 택 전	화		
	휴 대	전 화						자우편	주소		
	주	소									
	농 장	- 명					사	업자등록	번호		
농장현황	농장건	전화						성	명		
	팩스t	번호				대 표	생년원	월일			
	설 립	일		년 월 일			자	전화	번호		
	구성원	원수		명				전자우편	주소		
* ~	인증		卢	5 장 소	- 재 지			사육	인증	예 상	예 상 그 애
축 종	종류	시・군	급·구 읍·면 리·동			지	번	두수	두수	생산량 (단위)	금 액 (천원)
합 계											

※ 향후 확인·점검 결과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지급 대상자의 선정요건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해야 합니다.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직인

[별지 제3호서식]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	접수일				처리기간	30일	
				주민등	===== 록번호				
.1 -1 -1	성 명			자 택					
신 청 인	→ A			휴 대	 전 화				
	주 소			e-ma	ail				
변경사항	()사업대선	상자, ()인증기관, ()인증종류,	()농	지현황			
	구 분		당	초		변 경	ļ.	변경일자	
	성	명							
사 업	주민(법인)등	록번호							
대 상 자	주 :	소							
	전화번.	호							
인증기관	인증기:	관							
인공기관	인증번.	호							
인증종류	인증종-	류							
Сοоπ	인증번.	호							
	농지(축사))주소							
농지현황	인증품	목							
	사육두	수							
※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									
입금계좌	(은행명)		(예금주	-)	(계좌반	[호)			
 친환경축(난직불금 신청	내용(사	 업대상자, 인증기	 관, 인증종투	ᆜ 루, 농지현	년황)이 t	 년경되었음을	 을 신고하며,	
사업대상자	선정기관이 분	본인의 가	l인정보를 아래의	와 같이 처리 [.]	하는 것이	동의 (동	의하는 경·	우 네모(□)	
안에 ✔표시)합니다.								
□ 직불금	지급과 관련	하여 상기	기 개인정보의 수	∸집ㆍ이용에	동의합니	다.			
□ 직불금	지급과 관련	하여 상기	기 개인정보의 저	공에 동의합	니다.				
							년	월 일	
				,	<u> </u>		(서명	또는 날인)	
국립농	산물품질	관리원	장 귀하						
7.11.11.2			CP) 인증서 사본 1투 친환경농어업 육성		의 관리•자	원에 관한	법률 시행	수수료	
구비서류			따른 인증서 사본 서류(사업대상자 변					없음	
	U. 71111167	3/11 12 12		의 절 차					
시그나 자	-dy →	7			실 확인 및	→	FII ALTI 4	너저 토브	
신고서 직	7		접 수 처 리 기 관	내강자	선정 검토		대상자 선 처 리		
신청인			니 기 된 <u></u> 산물품질관리원)					기 판 물품질관리원)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[별지 제4호서식]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

접수번호				겉	접수일				처리기간	60일
						주민	등록번호			
시 취 이	성	명				자	택 전 화			
신 청 인	주	소				휴	대 전 화			
	T	т.				e	-mail			
	농 정	방 명				사업기	자등록번 <i>호</i>			
	농장전화						성 명			
농장현황	Fa	ıx				대 표	생년월일			
	설 립	님 일		년	월 일	자	전화번호			
	구성	원수			명		e-mail			
축 종	인증 종류	시・군	· 구	장 소 읍·면	재 지 리 • 동	지번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출하량 (단위)	금액 (천원)
	8 11	M · L	- I	н с	Ч 6	시킨	1 1	1 1	(211)	(22)
합 계										
입금계좌	(은행명) (예금주) (계조						(계좌반	[호)		
「농업・농	·촌 공익기	 기능 증진	! 직접	a지불제도	 E 운영에	 관한 t	 법률 시행령 ₋	제32조	드에 따라 위	와 같이 친
환경축산직접			,						본인의 개인	인정보를 아
래와 같이 ♬			=		-	-	게 ᄽ뾰시) 입 게 동의합니			
					ェー ㅜㅂ 보의 제공			Ы.		
									년	월 일
							신청인		(서명	또는 날인)
국립농	산물품	질관리	l 원경	당 귀하						
										 수수료
구비서류	거래내역/	서(정산서, 	세금/	예산서 등) :	등 생산·판매	실적을	입증할 수 있는	- 자료 		없음
					처 리	절 차				
신청서 직	rkd '	→		수 처	→		부 검토 및 획	인 →	직불금	
신청인 (코			리 기 관 上물품질관리	원)	처 리 기 관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			지 급 기 관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